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-10호

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

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(연구사·지도사, 9급) 필기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3월 6일

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

1 시험일시

○ **2026. 3. 14.(토) 10:00 ~ 11:00(60분)**

※ 시험장 출입은 08:00부터 가능하며, 09:10까지 시험실 입실

2 시험장소

○ 아래 표에서 본인이 응시하는 **직렬(직류) 및 임용예정기관에 따라** 본인에게 배정된 시험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본인에게 배정된 시험장에서만 시험 응시 가능합니다.(이외의 시험장에서 시험 응시 불가)

※ 직렬(직류)가 동일하더라도 임용예정기관에 따라 시험장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시험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지역별로 학교명이 유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시험장소, 교통편,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○ **시험장 내 외부차량의 주차를 허용하지 않으므로,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**

시험장		직렬(직류) : 임용예정기관
학교명	주소	
금오중학교	경기도 의정부시 금신로 380	● **시설9급(교통시설)** : 전(全) 기관 ● **시설9급(도시교통설계)** : 전(全) 기관 ● **해양수산9급(선박항해)** : 전(全) 기관 ● **해양수산9급(선박기관)** : 전(全) 기관
경기경영고등학교	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로 100	● **농업연구사(작물)** : 경기도

시험장		직렬(직류) : 임용예정기관
학교명	주소	
원곡고등학교	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15	● **농촌지도사(작물)** : 전(全) 기관 ● **농촌지도사(원예)** : 전(全) 기관
동성중학교	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293	● **학예연구사(학예일반)** : 경기도
감일중학교	경기도 하남시 감일백제로 55	● **학예연구사(학예일반)** : 성남시, 양주시, 안성시, 가평군

3 응시자 유의사항

[일반사항]

○ 모든 응시자는 시험당일 09:10까지 해당 시험실의 **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.** (시험 당일 08:00부터 입실 가능)

○ 모든 응시자는 시험당일 **응시표, 신분증,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, 수정테이프를 지참**하여야 합니다.

- 응시표 :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https://local.gosi.go.kr) → 마이페이지 → 응시표 출력
- 신분증 : **① 주민등록증, ② 여권(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지 않은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지참하여야 함), ③ 운전면허증, ④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, ⑤ 국가보훈등록증 중 하나**

※ **모바일신분증은** '소지가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'에서 표출되기 때문에 **시험 중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** 이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
※ **공무원증, 학생증, 자격수첩,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**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
※ **개명한 응시자는 증빙서류[개명 사실이 나타난 주민등록표 초본, 법원의 개명허가서(결정문) 등]를 지참하여야 합니다.**

- 답안을 잘못 표기한 경우 **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 가능**(수정액·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)하나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야 하며, 별도로 제공하지 않음

※ 시험시간 중 타인의 수정테이프를 빌리는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됨

○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, 교통편,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시험 당일 08:00 이전 시험실 출입 불가)

○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, **시험장 내 외부차량의 주차를 허용하지 않으므로,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**
(차량탑승 응시자는 시험장 인근에서 하차 후 도보 출입)

○ **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.**
(09:50 시험장 출입문 일괄 통제 예정)

○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(카페인·탄산음료 등)를 마시는 것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배탈·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**재입실이 불가**하며,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

○ **타 응시자에게 방해되는 행위(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, 볼펜 똑딱 소리, 반복적 헛기침 등)는 자제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시험장(시설 전체)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,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.

○ **시험시간 중에는** 휴대전화, 태블릿PC, 녹화기능이 탑재된 기기(안경 등), 스마트 시계, 무선호출기, MP3, 블루투스 이어폰 등 **일체의 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, 전자사전 등의 전자기기를 휴대할 수 없으며, 시험시간 중 휴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당해시험을 무효처리하고 퇴실**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○ **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** 시험감독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안내 또는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**반드시 본인의 시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**

※ 계산·통신 등이 가능한 시계(스마트 시계 등), 소리로 인해 타 응시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시계는 사용 불가

○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,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○ **이번 시험의 문제는 비공개 대상이므로 응시자는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.**

※ 비공개 문제책의 내용을 응시표 등에 옮겨 적거나 녹화기기(안경 등)로 촬영하거나 문제책을 훼손해서는 안됩니다.

○ 지진 발생 시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을 계속 보거나 책상 아래 또는 시험장 밖으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. 진동을 감지한 경우 침착하게 방송 또는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.

[답안지 기재 및 표기]

○ 점수산출은 판독기가 판독한 결과에 따릅니다.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"컴퓨터용 흑색 사인펜"을 사용하여 반드시 <보기>의 올바른 표기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.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(득점 불인정 등)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. 특히,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,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한 경우,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등은 불이익(득점 불인정 등)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<보기> 올바른 표기 : ● 잘못된 표기 : ◎, ◐, ◑, ⊘, ⊘, ⊙

○ 빨간색 볼펜, 연필,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표기를 하여 중복답안으로 판독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응시자는 시험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문제책 앞면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후 답안지 책형란에 해당 책형을 반드시 기재(표기)하여야 합니다.

※ 책형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(당해시험 무효 처리 등)을 받을 수 있음

○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책 편철이 표지의 과목순서와 일치하는지 여부, 문제책 누락, 인쇄 상태 및 파손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답안은 반드시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,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"●"로 표기해야 하며, **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야 하며,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.** **시험시간 중 타인의 수정테이프를 빌리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수정테이프가 없는 경우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**

※ **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,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눌러주어야 함(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)**

※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

○ **시험 중 답안지를 교체할 경우에는 성명, 책형, 생년월일 등 필수기재사항을 먼저 기재하고 시험감독관 서명이 있어야 답안을 옮겨 적을 수 있으며, 이전 답안지는 시험감독관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.**

○ 답안지는 훼손·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,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 마크(▮▮▮▮▮)를 절대 훼손해서는 안됩니다.

[부정행위 등 금지]

○ 다음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.
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제1항)

-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-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-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-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-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-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-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○ 다음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합니다.
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제2항)

-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
-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
-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
-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
  -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
  -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(수정테이프 등)을 빌리는 행위
  -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
  -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
  - 시험 종료 후에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는 행위
  - 본인에게 지정된 시험장이 아닌 타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행위
  - 기타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르지 않아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▶ **특히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, 당해시험을 무효처리**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책형 및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기재사항은 시험시간 내에 해당 시험실에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함

▶ 시험 중에 소지하고 있는 응시표의 앞면 또는 뒷면에 시험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인쇄되었거나 메모되어 있는 경우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,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4 필기시험 가산점(가점) 적용 및 등록 안내

○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반드시 **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**에 「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」 홈페이지(https://local.gosi.go.kr)에 접속하여 가산점 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. 가산점 등록기간 및 등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가산점 등록기간: 2026. 3. 14.(토) 09:00 ~ 3. 16.(월) 18:00, **기간 중 상시 등록 가능**
- 가산점 등록방법:
  -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https://local.gosi.go.kr) → 마이페이지 → 가산자격증 등록

○ **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**

구 분	가산비율	비 고
취업지원대상자	과목별 만점의 5% 또는 10%	·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적용 · 취업지원대상자(또는 의사상자 등)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·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설명 참고
의사상자 등	과목별 만점의 3% 또는 5%	
자격증 소지자	과목별 만점의 3% 또는 5% (1개의 자격증만 인정)	

○ **취업지원대상자 (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)**
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, 「5·18민주유공자

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0조,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19조,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「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제8조에 의한 생존 장병은 각 과목 만점의 40%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,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5% 또는 10%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
-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(기관별·직급별·직류별 등)로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
  ※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사전에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(보훈상담센터 ☎ 1577-0606)에서 확인하여야 하며, 필기시험 시행 전일(2026. 3. 13.)까지 지정되지 않으면 가산점을 받을 수 없음

○ **의사상자 등 (<u>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</u> 의사상자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)**

- 「지방공무원법」제34조의2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56조에 의한 의사상자 등은 각 과목 만점의 40%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,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3% 또는 5%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
-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(기관별·직급별·직류별 등)로 선발예정인원의 1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
  ※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사전에 본인이 직접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(☎ 044-202-3255)에서 확인하여야 하며, 필기시험 시행 전일(2026. 3. 13.)까지 지정되지 않으면 가산점을 받을 수 없음

- **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가산합니다.**

○ **가산 대상 자격(면허)증 소지자 (<u>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</u>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)**

-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
구 분	연구사·지도사	
	기술사, 기능장, 기사	산업기사
가산비율	5%	3%

※ 가산대상 자격(면허)증 종류는 [붙임] '가산 대상 자격증' 참조

※ 자격·면허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모집단위는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
➲ 금회 시험의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농업연구사, 농촌지도사만 해당

- 취업지원대상자(또는 의사상자 등) 가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적용됩니다.

○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

- 필기시험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, 반드시 <u>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</u>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(https://local.gosi.go.kr)에 가산점 정보 등을 등록하여야 합니다.

- 가산점 등록기간

등록기간	비 고
2026. 3. 14.(토) 09:00 ~ 3. 16.(월) 18:00	기간 중 상시 등록 가능 ※ 마감일의 경우 18:00까지만 등록 가능 유의

- 가산점 등록대상 및 등록사항

등록대상	등록사항
취업지원대상자	취업지원대상자 여부, 보훈번호, 가점비율
의사상자 등 (의사자 유족, 의상자, 의상자 가족)	의사상자 등 여부, 증서번호, 가점비율 ※ 가점 대상자 확인을 위해 필요시 의사상자 증명서 제출을 요청 받을 수 있음
가산 대상 자격(면허)증 소지자	자격(면허)증 종류, 자격(면허)번호

※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 등(의사자 유족, 의상자, 의상자 가족)은 동일하지 않습니다. 응시자는 사전에 본인의 등록대상을 확인한 후, 등록기간 내 등록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.

※ 가산점의 허위 기재, 잘못된 입력, 입력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가산점 등록 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5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

○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**2026. 4. 1.(수) 전·후**에 경기도 홈페이지(https://www.gg.go.kr)에 게시합니다.